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이철구 의원 외 15명)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철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63
----------	-----

발의연월일 : 2020. 8. 14.

발 의 자 : 이철구·김득환·이종열
남진복·윤승오·황병직
박현국·박영환·김하수
박미경·임미애·배진석
나기보·박영서·홍정근
김대일 의원(16명)

1. 개정이유

- 경상북도 내 자동차정비업체 실정과 인력수급 사정에 맞게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 정비요원의 최소 확보 기준을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로 달리 정하고,
-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일부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타 시도와의 형평성과 중앙부처의 의견을 고려한 규제 완화로 도민에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 정비요원 최소 확보 기준을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과 원동기 전문정비업의 경우,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함(안 제5조)

나.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접촉도로 제한 규정을 12미터에서 8미터로 변경하고, 사무실 위치에 대한 단서 규정을 두어 최대 100미터 이내로 전시설과 분리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

3. 개정 조례안: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붙임

가. 「자동차관리법」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5. 관련부서 협의

가. 법제심사: 붙임

나. 규제심사: 해당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해당부서 의견: 붙임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6. 발의의원 서명부: 붙임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과 같이 확보할 것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제4조 관련)

구 분	기 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 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 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사무실	•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시장·군수가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 일 것
다. 정비·성능점검 시설	• 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성능점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출구 및 입구	• 전시시설은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은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3. 정비·성능점검 시설은 주변 미관, 소음 공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u>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명 이상(자동차전문정비업은 1명 이상)의 정비요원을 두되,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일 것</u> ② · ③ (생 략)	제5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 -----. 1. (현행과 같음)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과 같이 확보할 것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② ·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①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자동차종합정비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4. 원동기전문정비업

②제1항에 따라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법 제5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

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①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동차 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장치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튜닝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정비대상 자동차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정하여 정비업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2. 자가정비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

③ 제5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의 범위와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제111조의2 관련)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구 분	기 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 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전시시설의 구조(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한다)	· 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무실	·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라. 정비·성능점검 시설	· 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성능점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기타	· 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에 자동차매매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하되, 두 곳 이상의 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2)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다른 건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3. 나목의 등록기준은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전시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정비·성능점검 시설은 주변 미관, 소음 공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구 분		자동차 종합 정비업	소형 자동차 종합 정비업	자동차 전문 정비업	자동차 원동기 정비업
가. 시설면적	작업장·검차장·사무실·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	1,000m ² 이상	400m ² 이상	50m ² 이상	300m ² 이상
나. 시설·장비	가.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	○	—
	나. 체인부록(1톤 이상)	—	—	—	○
	다. 도장시설(스프레이건 포함)	○	○	—	—
	라. 부동액회수재생기	○	○	○	○
다. 정비·검사기구	가. 제동시험기	○	○	—	—
	나. 전조등시험기	○	○	—	—
	다. 사이드슬립측정기	○	○	—	—
	라. 속도계시험기	○	○	—	—
	마. 일산화탄소측정기	○	○	○	○
	바. 탄화수소측정기	○	○	○	○
	사. 매연측정기	○	○	○	○
라. 시험·측정기	가. 연료분사펌프시험기	○	○	—	○
	나. 압력측정기	○	○	—	○
	다. 회전반경측정기	○	○	○	—
	라. 휠밸런스	○	○	○	—
	마. 토인측정기	○	○	○	—
	바. 캠버캐스터측정기	○	○	○	—
	사. 엔진종합시험기	—	—	—	○
	아. 노즐시험기	—	—	—	○
마. 공작기계	가. 실린더보링머신	—	—	—	○
	나. 실린더호닝머신	—	—	—	○
	다. 밸브시트그라인더	—	—	—	○
	라. 밸브시트카터	—	—	—	○
	마. 크랭크연마기	—	—	—	○
바. 삭제 <2013. 9. 6>					

주) 1. 둘 이상의 정비·검사기구 또는 시험·측정기의 기능을 모두 가진 하나의 정비·검사기구 또는 시험·측정기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가진 각각의 하나의 정비·검사기구 또는 시험·측정기를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2.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준 외에 자동차정비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구 분		기 준
가. 시설기준	시설 면적(해체작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을 포함)	4,500㎡ 이상
	해체작업장	600㎡ 이상
	부품보관창고	600㎡ 이상
나. 장비기준	구난차(권상능력 3톤 이상)	1식 이상
	지게차(인양능력 3.5톤 이상)	1식 이상
	중량계(계량능력 20톤 이상)	1식 이상
	압축기(압축능력 10㎡ 이상)	압축기·파쇄기· 전단기·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파쇄기(가압능력 500HP 이상 또는 생산능력 5톤/hr 이상)	
	전단기(전단능력 8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5톤/hr 이상)	
	용해로(용해능력 1회당 5톤 이상)	

주) 가목 및 나목 외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관련부서 협의

1 법제심사 (법무혁신담당관)

실 · 과	주요내용(조항)	의 건
법무혁신 담당관	안 제5조제1항제2호 <	

실 · 과	주요내용(조항)	의 건
법무혁신 담당관	안 별표 1 추가 검토사항	<개정문 수정 필요> - 별표 1 중 라. 출구 및 입구의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1 중 라. 출구 및 입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당초 개정문과 같이 한다면, 다음을 기준란에 해당하는 “전시시설은 8m -----” 부분만 작성하면 됨. <「자동차관리법」의 조례 위임 관계> - 법 제53조제3항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는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을 각각 정하면서 각각의 등록기준 외에 필요한 기준은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종합하면, 도의 조례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에서 정한 등록기준 외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최근 개정 사항 등 반영> - 2020년 6월 26일 공포되어 9월 2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 744호)의 내용 중 이 조례와 관련된 별표 21의2 개정 내용이 있으므로 이를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고, 그 부분은 9월 27일 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별표에서 정한 등록기준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와 동일한 대상에 대한 기준은 자동차관리법령의 취지로 보건대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실 · 과	주요내용(조항)	의견
법무혁신 담당관		※ 예를 들면, 자동차매매업의 사무실에 대해 시행규칙과 조례 모두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령의 조례 위임 규정의 취지로 보아 조례에서 시행규칙과 다르게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현행 별표 4 제2호(법제처 개선권고 사항)> -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조례 제5조의 ‘작업기준’은 ‘등록기준’과 달리 「자동차관리법」에서 명시적으로 위임된 사항이 아님 - 한편 등록기준 제정 권한이 조례로 위임되면서 작업기준 역시 함께 위임된 것으로 본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최초 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준과 등록 이후의 준수 규범은 구분된다 할 것이고, 「자동차관리법」 제57조 및 제57조의2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준수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 별표 4 제2호의 작업기준에서 법령상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의무사항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 삭제 검토 필요
	[작성 형식 관련] 공통사항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316참조> - 줄간격 230%, 문단 위·아래 0pt
	[신·구조문 대비표] 공통사항 안 제5조	- 개정되는 별표에 대해서는 신·구조문 대비표 작성 불필요 - 현행란 및 개정안란의 “② ~ ③”을 “②·③”로 수정

2 규제심사 (법무혁신담당관)

-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 치 법 규 명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 가 담 당	감사관실	직 급 성 명	행정7급 황 지 훈
입안주무부서	정책기획관	통보 (조 치) 일	2020. 8. 6.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부패 유발요인 없음		

평 가 항 목 별 검 토 자 료

□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크리스트 (종합)

평가분야	평가항목	해당 여부	응답내용	첨부사항
준수	준수부담의 적정성	×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높음	
	제재규정의 적정성	×	① 적당	해당없음
			② 약함	
			③ 강함	
	특혜발생 가능성	×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① 구체적 · 객관적	해당없음
			② 추상적 · 주관적	
	위탁 · 대행의 투명성 · 책임성	×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부적정	
	재정누수 가능성	×	① 명확	해당없음
			② 불명확	
행정절차	접근의 용이성	×	① 있음	해당없음
			② 없음	
	공 개 성	×	① 예측가능	해당없음
			② 예측곤란	
	예측가능성	×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실·과	주요내용(조항)	의견
교통 정책과	자동차정비업 정비요원 기준완화 (제5조 제1항 2호)	○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명(자동차전문정비업은 1명 이상)의 정비요원을 두되,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2012. 1. 1자로 자동차검사기능사와 자동차정비기능사는 자동차정비기능사로 통합되었으며 기능사 이상의 자격에 산업기사가 당연히 포함됨에 따라 용어정비가 필요하고 자동차분야 기능사를 자동차정비기능사로 합이 타당. ○ 또한, 자동차정비기능사의 수급과 타 시도 등록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정비요원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자동차매매업 사무실과 전시시설 분리 근거규정 (별표 1 중 나.)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道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규정에 따라 일정조건을 만족할 경우 매매업 전시시설의 100m 이내에 사무실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법령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타당함. ※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숨은규제 애로 개선」 건의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옴부즈만지원단-2843 2020. 7. 31.호)
	자동차매매업 접속도로 완화 (별표 1 중 라.)	○ 전시시설이 접해야 하는 도로 폭을 기존 12m에서 8m로 완화함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활성화와 규제완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다만, 도심지 교통혼잡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시지역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합리적 내용임. ※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및 [경상북도 남부권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 등록기준 완화와 규제개선 검토과제 지정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재정수반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및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접속도로 제한 규정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재정수반 요인 없음

4. 작성자

- 교통정책과 지방공업주사보 이경문(054-880-2666)



경 상 북 도



수신 교통정책과장

(경유)

제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관련 : 교통정책과-17415(2020.8.7.)호
2.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조례(규칙) 명	검 토 의 견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안을 비용추계 한 결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재정수반 요인이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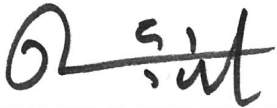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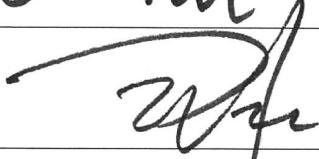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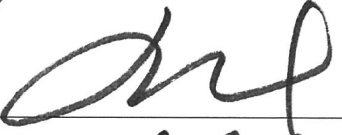
끝.

예 산 담 당 시 관 청 찬

주무관	김정윤	예산총괄팀장	이상현	예산담당관	서정찬	전결 2020. 8. 10.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10175	(2020. 8. 10.)	접수	교통정책과-17572	(2020. 8. 10.)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http://www.gb.go.kr	
전화번호	054-880-2153	팩스번호	054-880-2189	/ kly0102@korea.kr	/ 비공개(5)	
"생활 속 거리두기, 거리를 두면 안전이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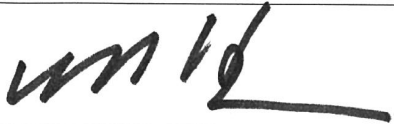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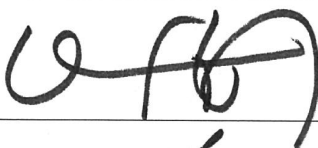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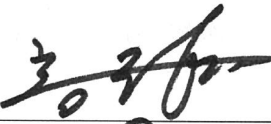
발의의원 서명부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명	서명	비고
이 창구		
김 득환		
이 종영		
김 천복		
이 흥민		
황 백익		
박 현국		
박 영환		
김 하수		
박 미경		
이 지애		
배 진석		

발의의원 서명부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명	서명	비고
나 기 보		
박 명 석		
홍 정 근		
김 래 인	